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3일, 이수진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8.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 의원)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개정안에서는 이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을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으로 구체화하여, 의료인 중 의료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하고,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사건 발생 인식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동시에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포함시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인력, 상담실장, 간호조무사 등이 모두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므로, 발달장애인의 유기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개입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그 수가 22만여 명(참고로, 활동 간호사의 수는 27만여 명)으로 신고의무자의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진료소’의 의료인(간호사 1,852명으로 파악)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바,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의 부칙 시행일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고의무자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용 대상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포 후 일정 기간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신고의무자 범위에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로 한정하는 한편,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8.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로 한정하는 한편, 개정 내용의 주지를 위한 준비기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및 부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의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사회복지사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5조(신고의무) ① (생략)	제15조(신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고의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 ----- ----- -----.	② (개정안과 같음)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1. 2. (개정안과 같음)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3.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과 직접 접촉하

4. ~ 16. (생략) ③·④ (생략)	4. ~ 1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u>공포한 날</u>부터 시행한다.	<u>는 「간호법」 제2조제3호의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사회복지사</u> 4. ~ 16. (개정안과 같음) ③·④ (개정안과 같음) 부칙 이 법은 <u>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u>부터 시행한다.
--------------------------------------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의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사회복지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신고의무) ① (생 략)	제15조(신고의무) ① (현행과 같 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 략)	②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 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 의 의료기관의 장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 료인,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같은 법 제3 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 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의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4. ~ 16. (생 략) ③ • ④ (생 략)	<u>의 사회복지사</u> 4. ~ 1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